



## 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

- 부동산감독추진단,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
-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강화

□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(단장 : 김용수 국무2차장<sup>겸임</sup>)은 2월 26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,

-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,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,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.

\* (참석) 재경부, 법무부, 행안부, 국토부, 금융위, 국세청, 경찰청, 금감원, 서울시, 경기도 등

□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,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,

- 현재 운영 중인 ‘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\*’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,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(3,000만원 이하) 부과,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\* (전자신고) 국토부(홈페이지), 렌트홈(불법행위 신고센터)

(서면·방문신고) 신고서(렌트홈 공지)를 작성하여 국토부(민간임대정책과), 광역지자체 및 관할지자체(주택소재)에 방문 또는 팩스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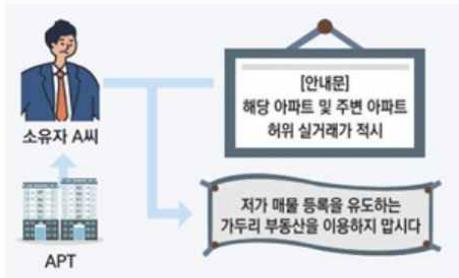
□ 특히,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국토부, 경찰청,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,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.
  -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.
  -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,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(강남·서초·송파 등)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  - 경기도는 수사 T/F 확대 운영, 도-시군 합동 특별조사, 신고센터 운영,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.
-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“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	책임자	과 장	신강민	(044-200-2645)
		담당자	사무관	김순영	(044-200-2647)
<공동>	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책임자	단 장	김명준	(044-201-3589)
		담당자	사무관	황도연	(044-201-3606)
			사무관	고건우	(044-201-3590)
			주무관	이진문	(044-201-3596)
<공동>	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태	(044-201-4100)
		담당자	사무관	장문석	(044-201-4476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	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	윤덕기	(02-2100-1690)
			사무관	이송이	(02-2100-1696)
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	책임자	국 장	황준하	(02-3145-8350)
담당자		팀 장	이훈아	(02-3145-8352)	
<공동>	국세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	오은정	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	양창호	(044-204-3417)
<공동>	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안찬수	(02-3150-2626)
		담당자	경 감	장우성	(02-3150-1726)

다음 행위는  
**집값 담합**에 해당합니다.  
 집값 담합은 **명백한 불법행위**입니다.

**1** 집값 담합 유도(안내문·현수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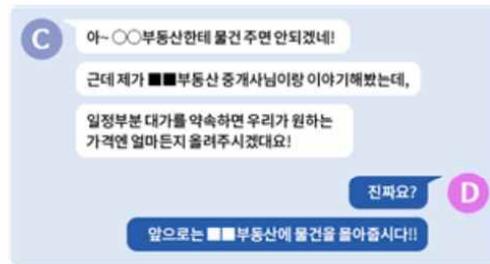
**2**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 
 하지 않도록 유도(온라인 카페 등)



**3** 특정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 제한



**4** 특정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 유도



**5**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 방해



**6**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·광고강요



**집값 담합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**  
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

**집값 담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**  
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, ☎1644-9782